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644,321,745	229,329,652
일	반 회 계	6,191,641,973	185,749,259
특	별 회 계	1,452,679,772	43,580,393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29,341,084	9,880,233
①	상 수 도 사 업	148,091,391	4,442,742
②	하 수 도 사 업	181,249,693	5,437,491
	기 타 특 별 회 계	1,123,338,688	33,700,161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386,387,702	11,591,631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5,549,607	166,488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6,666,619	199,999
④	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50,296,632	1,508,899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1,174,707	35,241
⑥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41,484,038	1,244,521
⑦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10,975,858	329,276
⑧	학 교 용 지 부 담 특 별 회 계	37,136,823	1,114,105
⑨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9,833,222	294,997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57,544,319	1,726,330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23,964,853	9,718,946
⑫	소 방 특 별 회 계	192,324,308	5,769,729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,700,232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 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 금회 추경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(이월 포함)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